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09. 3.



# 목 차

## I.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3
2. 추진경과 .....	4
3.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	4
4.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방안 .....	5
5. 심사평가 방안.....	8

## II. 재허가 신청공고

1. 재허가 신청 공고문.....	11
--------------------	----

## III. 심사 기본방향 및 심사항목

1. 심사평가 기본방향 .....	15
2. 심사평가 방법 .....	15
2. 세부심사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16

## IV. 재허가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명단 .....	23
2.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23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24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26
5.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	26
6.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	27

## V. 방송국 기술심사

1.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 31
2. 기술적 허가조건(안)..... 32

## V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내역

1.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2008.12.11) 의결내용..... 35

## 부록

1. 재허가 대상 방송국 ..... 39
2. 재허가 신청 안내문..... 41
3. 시청자의견 청취 공고문 ..... 51
4.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문..... 53

## I.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 1. 재허가 대상

## 가.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운영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전파법시행령 제27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전파법시행령 】**

제27조(무선국의 분류) 제2호.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 지상파방송보조 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6조(업무의 분류) 제2호.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 나. 재허가 대상 방송국

- 총 11개 방송사업자, 17개 방송국

구 분	디지털TV	FM라디오	합계
합계 (11개 사업자)	12	5	17
한국방송공사 <sup>1)</sup>	6	1	7
진주문화방송(주)	1		1
(주)KNN	1		1
(주)대구방송	1		1
(주)광주방송	1		1
(주)대전방송	1		1
(주)울산방송	1		1
(주)제주방송		1	1
(주)경인방송		1	1
도로교통공단 <sup>2)</sup>		1	1
국제방송교류재단		1	1

※ 주1) 진주제1·순천제1·강릉제1·강릉제2·충주제1·안동제1DTV, 청주제2표준FM

주2) 교통전주

## 2. 추진경과

일자	내용	비고
2008. 5. 30	○재허가 기본계획 확정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2008. 6. 5	○재허가 신청 공고	관보, 홈페이지
2008. 6. 9	○재허가 신청 안내	문서
2008. 6.~8. 25	○재허가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2008. 8. 20	○시청자의견 청취 공고	관보, 홈페이지
2008.11.18~21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 11개 사업자 의견청취 · KBS, 진주MBC,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4일간 운영
2007. 12. 11	○재허가 의결 - KBS 등 10개 사업자 재허가 - 국제방송교류재단 조건부 재허가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 3.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평가, 향후 사업 계획 평가
- 아날로그 TV와 동시 방송되고 있는 디지털 TV방송국에 대한 방송 평가는 아날로그 TV방송국의 평가결과를 적용



#### 4.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 가. 심사위원회 구성

###### ○ 구성원칙

- 위원회 위원 및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 ○ 구성방안 (9인)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심사위원(8)	방송평가위원(1)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방송분야(2)	신문방송 관련 학과 교수
	법률분야(1)	변호사 또는 법학과 교수
	경영·회계분야(1)	경영·경제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기관 종사자
	기술분야(1)	대학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시청자·소비자분야 종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1인)	담당과장

###### ○ 위촉기준

-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서 상기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결격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의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자
- 본인이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의 사용인이거나 과거 2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100이상의 주식이나 지분 소유자
- 재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심사위원회 운영

○ 기본 방향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심사위원회의 직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한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심사
- 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 평가원칙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계량 평가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공개적으로 청취한 시청자 의견의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개별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
  - 계 량 : 방송평가, 시정 명령 횟수 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량화
  - 비계량 :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반영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은 하지 않되, 비계량 평가 항목의 점수평가에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

## 5. 심사평가 방안

### 가.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량	500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량	감점
3.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비계량	100점
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00점
5.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75점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75점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비계량	50점
8.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50점
9.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50점
계		1,000점

### 나. 재허가 여부 결정

-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함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음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II. 재허가 신청공고



## 재허가 신청 공고문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8. 6. 5.

방송통신위원회

- 재허가 신청 대상 : 2008.12.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국
  - 신청기한 : 2008. 6. 30(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서약서, 일반현황,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방송국 허가증 사본, 주간기본편성표, 요약본, 첨부서류 (감사보고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등)
  -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 재허가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지상파방송과 재허가 담당(02-750-2432, [kimbh@kcc.go.kr](mailto:kimbh@kcc.go.kr))
- 첨부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1부.





### **III. 심사 기본방향 및 심사항목**



## 1. 심사평가 기본방향

-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평가, 향후 사업 계획 평가
- 아날로그 TV와 동시 방송되고 있는 디지털 TV방송국에 대한 방송 평가는 아날로그 TV방송국의 평가결과를 적용

## 2. 심사평가 방법

### 가. 평가원칙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계량 평가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공개적으로 청취한 시청자 의견의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개별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은 하지 않되, 비계량 평가 항목의 점수 평가에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

### 나. 평가지표

- 계 량 : 방송평가, 시청 명령 횟수 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량화
- 비계량 :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다. 평가방법

- 심사위원들이 해당항목 개별 평가표 작성 후 확인 날인
-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기록(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자료 미제출 사업자는 항목별 배점 및 등급과 관계없이 최저점수 (0점)를 부여

3. 세부심사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 개요 : 방송국별로 평가

구분	평가방법	①채널별 방송평가	②채널별 심사평가	합계(①+②) (1,000점)
	총배점	500점	500점	
TV, 라디오		○ 각 연도별 환산점수 평균 - 2006년 및 2007년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500점	시정명령 : 감점

※ 한국방송공사가 국가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 사회교육 방송, 사랑의 소리방송, 국군방송 등 방송평가 미 실시 방송국에 대하여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점수의 2배를 적용

① 방송평가(500점)

- 방송평가위원회의 최근 2년간('06~'07) 방송평가 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평균 점수

② 시정명령(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사례	감점	계량	○ 시정명령 1회당 5점 감점 ○ 시정명령 불이행시 10점 감점 (심의제재와 중복된 시정명령 제외)

③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0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3-1. 공익성 강화 계획 이행내용	4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성 강화 관련 이행실적</li> <li>○ 공익성 강화 계획 이행내용의 적정성</li> <li>○ 방송사 각종 수상실적</li> </ul>
3-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및 실현가능성</li> </ul>
3-3.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1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의 적정성</li> </ul>
3-4. 협찬운영의 적정성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찬운영 현황</li> <li>○ 협찬운영의 적정성</li> </ul>

④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0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4-1. 편성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내용	4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기본방향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li> <li>○ 프로그램 제작계획 이행실적의 우수성</li> </ul>
4-2. 방송분야별·제작 주체별 편성 실적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li> <li>○ 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 실적</li> <li>○ 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li> <li>○ 낮시간대 편성비율 및 계획의 적정성</li> </ul>
4-3. 향후 3년간 제작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기본방향의 적정성</li> <li>○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정성</li> <li>○ 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의 적정성</li> <li>○ 로컬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의 적정성</li> </ul>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75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5-1.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li> <li>-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등</li> </ul> </li> <li>○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운영의 기본방침 및 효율성 강화 계획</li> <li>- 인력운용 계획 등</li> </ul> </li> </ul>
5-2.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경영·편성 분리 등의 적정성</li> </ul> </li> <li>○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li> </ul>
5-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1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li> </ul>
5-4. 분야별 투자실적 및 계획	25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실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제작</li> <li>-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 및 세부내역</li> <l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세부내역</li> </ul> </li> <li>○ 투자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제작</li> <li>-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 및 세부내역</li> <l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세부내역</li> </ul> </li> </ul>

⑥ 재정 및 기술적 능력(75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6-1. 재무구조 및 계획의 적정성	45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안정성 및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등을 참고하여 평가)</li> <li>○ 추정 재무제표 및 수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li> </ul>
6-3. 기술적 능력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설 투자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제작시설, 송신 관련 시설</li> <li>- 아날로그시설, 디지털시설</li> <li>- 시설투자 주요 내역 등</li> </ul> </li> <li>○ 부가서비스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li> </ul>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7-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li> <li>○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실적의 적정성</li> </ul>
7-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의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li> </ul>

**8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8-1.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의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이행 실적 및 처리의 적정성</li> <li>○ 시청자불만처리 현황 분석 및 평가</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종합편성방송사업자)</li> </ul>
8-2.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종합편성방송사업자)</li> </ul>

**9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9-1.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실적	1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페인 · 행사 · 기부 등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실적</li> </ul>
9-2.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의 적정성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받은 방송구역내에서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내용의 적정성</li> </ul>
9-3.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방안 및 실현계획	2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창달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 IV. 재허가심사위원회



## 1.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분야
심사위원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총괄
심사위원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방송평가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방송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
	강동균	CN경영컨설팅 대표 공인회계사	경영·회계
	이석필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방송통신연구센터장	기술
	조연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시민·시청자
	김정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장	사무국

## 2.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기간 : 2008. 11. 18.~11. 21.(4일)

심사 일정	세부 내용
1일차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의결</li> <li>○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li> </ul>
2일차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li> <li>○ 신청인(대표자 등) 의견청취 - 진주MBC, KNN, 제주방송, 광주방송, 경인방송 등 5개사</li> </ul>
3일차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대표자 등) 의견청취 - 국제방송교류재단, KBS, 대구방송, 도로교통공단, 대전방송, 울산방송 등 6개사</li> </ul>
4일차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 작성</li> </ul>

###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가. 의견청취 대상 사업자 선정

-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08년 11월 18일(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허가 대상 전체 11개 사업자로부터 11월 19일 오후와 11월 20일 오전, 오후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

#### 나. 참석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다. 청취 일정

의견청취일	청취시간	대상사업자
2008.11.19 (수)	14:00~15:07	진주문화방송(주)
	15:13~16:05	(주)KNN
	16:15~16:55	(주)제주방송
	17:00~17:30	(주)광주방송
	17:40~18:40	(주)경인방송
2008.11.20 (목)	10:00~11:15	국제방송교류재단
	11:25~12:20	한국방송공사
	13:40~14:20	(주)대구방송
	14:25~15:00	도로교통공단
	15:15~15:57	(주)대전방송
	16:05~16:40	(주)울산방송

라. 참석자 현황

□ 제2일차 2008.11.19(수)

방송사	참석자
진주문화방송(주)	정일윤 사장 * 조경래(경영사업국장), 박상범(보도제작국장), 강병호(방송기술국장)
(주)KNN	김석환 이사 (대표 위임) * 안준호(편성기획팀 차장), 지용호(경영기획팀 차장)
(주)제주방송	김양수 사장 * 송정일(편성제작국장), 채병수(경영관리국장), 양종현(기술국장)
(주)광주방송	김순길 전무 (대표 위임) * 김주완(편성제작국장), 정동완(기술국장), 신옥태(경영부장)
(주)경인방송	권혁철 사장 * 김선옥(전무이사), 장우식(방송본부장), 노종철(경영지원팀장)

□ 제3일차 2008.11.20(목)

방송사	참석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 김영종(라디오제작팀장), 김덕환(방송기술팀부장), 이용재(혁신기획팀장)
한국방송공사	유광호 부사장 (대표 위임) * 조하룡(지역정책팀장), 이선재(대외정책팀장), 김석두(기술전략팀장), 김창조 편성기획팀 선임, 박범서 대외정책팀 선임
(주)대구방송	이노수 사장 * 김정환(편성제작본부장), 김한덕(정책심의실장), 윤찬(디지털기술팀장)
도로교통공단	김대식 방송사업본부장 (대표 위임) * 이상록(전주본부장), 박운호(방송관리팀장), 황금산(전주본부 편성제작국장)
(주)대전방송	이중기 사장 * 이현철(기술국장), 임규광(정책기획팀장)
(주)울산방송	김종걸 사장 * 이상용(편성제작국장), 최영걸(기술국장), 손영태(심의부장)

####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 2008. 8. 20(수)~9. 4(목)까지 총 14건의 시청자 의견(요지: 경인방송의 SunnyFM을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재허가 희망)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였고,

- 재허가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11.18)에 의견요지를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 '부록 3 - 시청자의견 청취 공고문' 참조

#### 5.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순번	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평가	심사평가	총점
1	한국방송공사	KBS진주 제1DTV방송국	404.84	332.63	737.47
2	한국방송공사	KBS순천 제1DTV방송국	405.17	335.76	740.93
3	한국방송공사	KBS강릉 제1DTV방송국	404.72	338.13	742.85
4	한국방송공사	KBS강릉 제2DTV방송국	375.74	315.38	691.12
5	한국방송공사	KBS충주 제1DTV방송국	403.77	328.88	732.65
6	한국방송공사	KBS안동 제1DTV방송국	403.83	330.01	733.84
7	한국방송공사	KBS청주 제2표준FM방송국	375.18	321.76	696.94
8	진주문화방송(주)	진주문화 지상파DTV방송국	356.92	344.13	701.05
9	(주)KNN	KNN DTV방송국	379.79	394.88	774.67
10	(주)대구방송	TBC DTV방송국	387.64	375.38	763.02
11	(주)광주방송	KBC DTV방송국	376.44	368.88	745.32
12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381.28	376.75	758.03
13	(주)울산방송	UBC DTV방송국	389.31	379.38	768.69
14	(주)제주방송	JIBS FM방송국	344.45	350.50	694.95
15	(주)경인방송	경인 FM방송국	346.33	386.13	732.46
16	도로교통공단	교통전주 FM방송국	380.68	342.75	723.43
17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 FM방송국	374.49	274.50	648.99

## 6.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 ①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방송구역 내의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투자 확대가 요구됨 (TV공통)
- ②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제주FM방송국'은 방송구역이 제주지역임에도 제주거주 외국인·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약속한 '제주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강화 이행'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③ KBS지역DTV방송국의 경우 자체 제작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본사의 네트워크 유지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자체제작비율을 상향하거나 로컬비율을 반영한 효율적 지역국 운용 방안이 필요함.
- ④ KBS는 현재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2009년에 7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향후 3년간 지역국의 인력운영규모를 예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력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음.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임.
- ⑤ 경인방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옥의 건물주로부터 사옥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사옥이전에 대비하여 중단 없는 방송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인방송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유일한 지상파민영방송사로서의 정체성 구현 및 인천지역민을 위한 지역·생활정보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⑥ 경인방송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확정판결 후 주식감자 및 신주발행을 완료하게 되면 최대채권자(정○○)의 주식 지분율(77.37%)이 방송법상 소유상한(30%)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V. 방송국 기술심사



# 1.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

○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조건을 모두 충족

심사항목	심사결과 (12개 DTV방송국, 5개 FM방송국 공통)	비 고
<b>1. 무선국 개설 일반조건</b>		
· 주파수지정 가능성	기존의 사용채널로 주파수 지정 가능	법 제21조제2항제1호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법 제21조제2항제2호
·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성	전파법 제71조의 배치기준에 적합	법 제21조제2항제3호
<b>2. 방송국 개설 일반조건</b>		
· 혼신발생 여부	주변 방송국의 주파수 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송국의 수신에 혼신발생 가능성이 낮음	법 제35조제1항
· 연주소 시설의 보유여부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용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연주소시설을 보유함	영 제55조제2호
·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각 방송국별 설치장소 선정 및 송신시설의 설치계획이 방송구역 내에서 능률적인 전계강도 분포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작성됨	영 제55조제3호
· 기술적 능력의 보유여부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중임	영 제55조제4호
<b>3. 초단파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개설조건</b>		
·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 적합성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 분포를 발생시키고, 타 지역에서의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위치에 설치·운영중임	영 제57조제1항제1호
·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 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의 적합성	방송구역을 충분히 서비스하면서 불필요한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 출력임	영 제57조제1항제2호
· 다른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의 접근장소 여부	방송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타 방송국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하여 설치·운영중임	영 제57조제1항제3호
<b>4. 무선국 개설자 적격</b>		
· 개설자의 적격성	심사결과 적격	법 제20조제1항각호

## 2. 기술적 허가조건(안)

### < 지상파디지털TV 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안) >

1.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할 것
2.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3.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4. 방송구역 내의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 FM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안) >

1.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2.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V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내역



##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2008.12.11) 의결내용

- 진주문화방송(주)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1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 다만, (재)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제주FM방송국은 아래의 조건을 부과한다.

### < 재허가 조건 >

- 재허가 과정에서 제출한('08.12.3) '제주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재허가 방송국에 대하여 기술적 허가조건(부관사항)을 부과한다.

### < 지상파디지털TV 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 >

1.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할 것
2.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3.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4. 방송구역 내의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 FM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 >

1.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2.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나. 재허가 신청사업자 및 방송국

사업자명	대표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세부내용 : 붙임 1)			허가만료일
		디지털TV	FM	계	
계		12	5	17	
한국방송공사	이병순	6	1	7	'08.12.31
진주문화방송(주)	정일운	1		1	"
(주)KNN	이만수	1		1	"
(주)대구방송	이노수	1		1	"
(주)광주방송	박흥석	1		1	"
(주)대전방송	이중기	1		1	"
(주)울산방송	김종걸	1		1	"
(주)제주방송	김양수		1	1	"
(주)경인방송	권혁철		1	1	"
도로교통공단	정봉채		1	1	"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1	1	"



# 부 록



## [부록 1]

### 1. 재허가 대상 방송국

순번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방송국의 명칭	매체	소재지	
					연주소	송신소
1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진주제1DTV지상파방송국	DTV	진주	진주
2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순천제1DTV방송국	DTV	순천	남해
3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강릉제1DTV방송국	DTV	강릉	강릉
4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강릉제2DTV방송국	DTV	강릉	강릉
5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충주제1DTV방송국	DTV	충주	음성
6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안동제1DTV방송국	DTV	안동	안동
7	한국방송공사	2008.12.31	KBS청주제2표준FM방송국	FM	청주	청주
8	진주문화방송(주)	2008.12.31	진주문화지상파DTV방송국	DTV	진주	진주
9	(주)KNN	2008.12.31	KNN DTV방송국	DTV	부산	부산
10	(주)대구방송	2008.12.31	TBC DTV방송국	DTV	대구	영천
11	(주)광주방송	2008.12.31	KBC DTV방송국	DTV	광주	광주
12	(주)대전방송	2008.12.31	TJB DTV방송국	DTV	대전	대전
13	(주)울산방송	2008.12.31	UBC DTV방송국	DTV	울산	울산
14	(주)제주방송	2008.12.31	JIBS FM방송국	FM	제주	제주
15	(주)경인방송	2008.12.31	경인FM방송국	FM	인천	인천
16	도로교통공단	2008.12.31	교통전주FM방송국	FM	김제	김제
17	(재)국제방송교류재단	2008.12.31	아리랑제주FM방송국	FM	제주	제주



[부록 2]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2008. 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목 차

I. 재허가 계획(개요)	2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2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2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2
4. 추진일정	3
5. 유의사항	3
II. 재허가 심사	4
1. 심사방향	5
2. 심사절차 개괄	5
3. 심사항목 및 배점	6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7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8
2. 작성 및 제출요령	9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0
V. 첨부 : 신청서류 작성양식	28





# I. 재허가 계획(개요)

##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운영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2008년12월31일로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전파법시행령 제27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본 재허가 계획과 별개로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함

### 【 전파법시행령 】

제27조(무선국의 분류) 제2호.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6조(업무의 분류) 제2호.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 방송국 허가증상에 방송국의 명칭이 방송보조국, 중계소 또는 간이중계소 등으로 표기

##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 가. 제출기한 : 2008. 6. 30.(월), 18:00
- 나.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다.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재허가 담당자 앞
-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 문의 : 지상파방송과 재허가담당(02-750-2432, [kimbh@kcc.go.kr](mailto:kimbh@kcc.go.kr))

※ 방송사업자별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성

##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 가. 재허가 여부 결정

-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한 후, 재허가 여부 결정

- 총 1,000점 만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음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나. 방송국 허가

- 재허가 심사평가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
  -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게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재허가
  - 재허가 거부 대상 사업자에게는 재허가 거부사유 등 그 결과를 통보

#### 4.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6월 말	○ 재허가 신청서 접수(접수기한 : 6월 30일)	
7월~8월	○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보정 ○ 시청자의견 수렴(관보 및 인터넷 게재) ○ 방송국 기술심사	미제출서류 및 보완사항 통보
9월~10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국 기술심사(계속)	의견청취 포함
11월	○ 재허가 의결 ○ 방송국 허가증 교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II. 재허가 심사

### 1. 심사방향

-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 평가, 향후 사업계획 평가
- 아날로그TV와 동시방송되고 있는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는 아날로그TV방송국의 평가결과를 적용
-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자별로 방송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재허가 신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 ※ 예) '07년도에 아날로그TV를 허가받은 방송사가 '08년도에 디지털TV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디지털TV의 허가유효기간을 '10.12.31(2년)로 정하여 '10년에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를 동시 재허가

### 2. 심사절차 개괄

#### 가.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나. 시청자 의견 수렴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다. 신청서류 보정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라.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 마.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및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평가항목별 전문가로 구성

마.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 결과는 심사에 반영

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아.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향후 백서 발간 등

3.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 점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 량	5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 량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3.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비계량	10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비계량	100점	“
5.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75점	“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75점	“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비계량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8.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5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및 동조제4항
9.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심사항목별 세부기준은 추후 결정

###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가. 제출서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공문</li> <li>② 방송국재허가신청서</li> <li>③ 재허가대상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목록</li> <li>④ 서약서</li> <li>⑤ 일반현황</li> <li>⑥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li> <li>⑦ 방송국 허가증 사본</li> <li>⑧ 주간기본편성표</li> <li>⑨ 요약문</li> <li>⑩ 첨부서류(감사보고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등)</li> </ul> |
|---|

##### 나. 제출 부수 - 제본서류 19부 및 원본내용 포함 CD 4개 및 첨부서류

구분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3	2	서류 4부 + CD 2개 제출
보정 후 재접수시	(원본 보정)	15	2	사본 15부 + CD 2개 추가 제출
계	1	18	4	총 서류 19부 및 CD 4개 제출

※ 방송국재허가신청서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및 시설 설치계획서 각 1부만 첨부한 부분 1부를 같이 제출

##### 주1)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2006년, 2007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 시설설치계획서 1부

주<sup>2)</sup> 기타 부속서류가 있는 경우,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

주<sup>3)</sup> 방송국 허가증 등은 스캔하여 파일(JPEG)로 변환, 수록·제출

## 2. 작성 및 제출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방송보조국 포함) 및 재무제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연주소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첨부 재허가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방송국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부록 3]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08 - 48호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0.

방송통신위원회

####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7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KBS) : 진주(제1DTV), 순천(제1DTV), 강릉(제1, 제2DTV), 충주(제1DTV), 안동(제1DTV), 청주(제2표준FM)
- 지역MBC : 진주문화방송(DTV)
- 민영방송 6개사 : KNN(DTV), 광주방송(DTV), 대구방송(DTV), 대전방송(DTV), 울산방송(DTV), 제주방송(FM)
- 기타 3개사 : 경인방송(Sunny FM), 도로교통공단(교통방송 TBN FM), 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아리랑FM)

####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 · 편성 · 운영 · 대시청자 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제출기한

- 2008. 8. 20.(수) ~ 2008. 9. 4.(목) 18:00까지

###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4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아니함.

###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02-750-2432)



[부록 4]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8. 12. 16

방송통신위원회

□ 재허가 신청사업자 및 방송국

사업자명	대표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허가만료 일
		디지털TV	FM	계	
계		12	5	17	
한국방송공사 <sup>주1)</sup>	이병순	6	1	7	'08.12.31
진주문화방송(주)	정일윤	1		1	"
(주)KNN	이만수	1		1	"
(주)대구방송	이노수	1		1	"
(주)광주방송	박홍석	1		1	"
(주)대전방송	이중기	1		1	"
(주)울산방송	김종걸	1		1	"
(주)제주방송	김양수		1	1	"
(주)경인방송	권혁철		1	1	"
도로교통공단 <sup>주2)</sup>	정봉채		1	1	"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1	1	"

주 1) : 진주제1·순천제1·강릉제1·강릉제2·충주제1·안동제1DTV방송국, 청주제2표준FM방송국

주 2) : 교통전주FM방송국

□ 심사결과

-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업자, 1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

□ 시청자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 접수기간 : 2008. 8. 20(수)~9. 4(목)

- 접수결과

- 총 14건 접수 (전자우편)

- 의견요지 : 경인방송의 SunnyFM을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재허가 희망

- 반영여부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11.18)에 의견요지를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끝.